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2185
----------	------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3,643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1,178백만 원
 -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2,465백만 원
 - 건전한 문화예술 선도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달성군 대표 문화브랜드를 통한 지역 홍보 및 가치 제고

3. 출연심의 요구서 : 따로 붙임

4.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따로 붙임

5. 출연기관 현황 : 따로 붙임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 출연 예정금액 : 3,643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출 연 사업비	구 분	사업 기간	2022 예산액 <최종>	2023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합 계		2,833	3,643	3,643	-	-	3,643
	인력운영비	1~12월	627	794	794	-	-	794
	기본경비	1~12월	306	384	384	-	-	384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200	450	450	-	-	45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150	430	430	-	-	430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200	200	200	-	-	200
	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	1~12월	150	125	125	-	-	125
	예술자치구역	1~12월	50	150	150	-	-	1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20	120	120	-	-	120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250	120	120	-	-	120
	달성음악회	1~12월	40	-	-	-	-	-
	YES! 키즈존	5월 10월	-	290	290	-	-	290
	성악중창 페스티벌	1~12월	95	-	-	-	-	-
	문화기획지원	1~12월	20	180	180	-	-	180
	도동페스타	5~6월	75	-	-	-	-	0
	문화도시사업 (공모사업)	1~12월	550	200	200	-	-	200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	200	200	-	-	200

출 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 거 법 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 업 부 서 의 건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2. 3. ~ '22. 6.)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0.61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7.32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6.43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6.86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0.61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3년 출연금 3,643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178백만 원
 - 2023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자체사업비 2,465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최종> (A)	2023년 예산(안)			
			재단 예산액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전년대비 증감액 (B-A)
총 계	2,845	2,833	4,750	3,643	3,643	810
기관운영비	1,119	933	1,585	1,178	1,178	245
인력운영비	721	627	1,001	794	794	167
기본경비	398	306	584	384	384	78
자체사업비	1,726	1,900	3,165	2,465	2,465	565
달성 100대 피아노	-	200	550	450	450	25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377	150	530	430	430	28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159	200	200	200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58	150	125	125	125	△25
예술자치구역	140	50	150	150	150	10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75	120	120	120	120	-
달성 스토리텔링	205	250	120	120	120	△130
달성음악회	-	40	-	-	-	△40
YES! 키즈존	-	-	290	290	290	290
성악중창 페스티벌	-	95	-	-	-	△95
문화기획지원	107	20	180	180	180	160
도동페스타	-	75	-	-	-	△75
문화도시사업 (공모사업)	454	550	600	200	200	△350
달성문화교차로	-	-	200	200	200	200
새봄맞이음악회	2	-	-	-	-	-
달성고유물수집사업	25	-	-	-	-	-
10주년 기념백서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92	-	-	-	-	-
학술세미나·비전선포식	32	-	-	-	-	-
예비비	-	-	100	-	-	-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21.10.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정대용	경산시립예술단 단무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허수정	CM코리아 공연기획 대표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호현	달성군 문화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2.8.23.~2024.8.22	
	감사	박은주	달성군 문화예술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1.12.31 기준	자산	9,586백만원
	예산액	6,692	7,020	7,070		부채	1,623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5,437	4,782	4,553		자본	7,963백만원

-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